

# 협회 교육사업의 오늘과 내일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협회도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06년 교육사업 실적

협회의 2006년 교육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될 수도시설운영요원 법정 의무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준비를 포함하여 순회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1. 순회교육

순회교육은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교육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 5개 광역시와 3개 도(道)를 중심으로 800명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주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상수도 분야에서는 새로 개정된 '수도법 및 하위법령',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전환'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 2. 사이버교육

2006년 협회에서 운영된 사이버 교육과정은 '정수장 운영 및 관리과정'과 '하수처리시설 운영과정' 등 2개 과정으로 각 2회씩 진행되었다. 수료인원은 상수 261명, 하수 34명으로 총 295명이 수료하였다.

사이버교육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교육방법으로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최소로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야 하며, 교육생 스스로 학습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집합교육에 투자되는 인력과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사이버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 3. 수도시설운영요원 법정 의무교육

2006년 6월 개정된 수도법 제21조의 5 및 시행령 24조의 3에 의해 2007년부터 일반수도사업자에 고용된 수도시설운영요원은 3년마다 35시간씩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 상 협회는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수도사업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잘 조성되어 있어 타 교육기관에 비해 발 빠르게 교육준비를 시작하였다.

우선 교육대상자들의 요구(Needs)를 파악하여 이를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7개 특·광역시와 2개 도(제주, 경기)를 중심으로 총 862명에게 교육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협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2007년 법정 의무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협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에 대비하여 정수시설운영자과정을 I, II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이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범위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10월경에 확정된다.

## 2007년 교육운영 계획

### 1. 수도시설 운영요원 법정 의무교육

협회는 환경부 및 타 교육실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7년부터 정수시설 운영자 과정을 중심으로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교육대상자들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방법으로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순회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시간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ISO/TC224 관련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내용 등을 교육에 반영하여 200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행정직 초급 및 중급 과정을 본격적으로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정 의무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물 시장 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인력들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 2. 사이버교육

정부의 법정 의무 교육방법에 대한 기본방향이 기존의 집합교육에서 원격교육(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협회도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2007년도에는 법정 의무교육과정인 '정수시설 운영자과정'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 분야 역시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 운영과정'을 수정·보완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좀 더 많은 하수도 종사자들이 협회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질 높은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개발 및 운영 외에 효율적인 학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학습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3. 공무원 전문교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연평균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법정 의무교육인 35시간 외에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협회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교육과 연계하여 타 기관과는 차별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협회는 교육을 통해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

## 한국상하수도협회 2007년 교육운영계획안

구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비(원)
법정 의무교육	정수시설 운영자과정 I	35hr	150,000
	정수시설 운영자과정 II	54hr	200,000
	행정직 초급과정	35hr	250,000
	행정직 중급과정	35hr	250,000
사이버교육	하수도 운영 기본과정	24hr	50,000
공무원 전문교육	하수도 시설 기준 개정 강습회	35hr	250,000
	상수도 전문교육	35hr	별도 책정
	하수도 전문교육	35hr	별도 책정
	해외 위탁교육	49hr	2,500,000

※ 협회의 사정에 따라 교육 과정과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음.